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4
----------	------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9일

발 의 자 : 서영진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제리, 이현찬, 이순자, 김경자(양천),
문영민, 김동욱, 최관술, 이정훈,
박진형 의원(9명)

1. 제안 이유

동 조례는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 여성 위주에서 남성으로 바뀔에 따라 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며, 또한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을 시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제복의 종류 중 현재 착용하지 않는 제복 제3조 제1항 제1호 다, 라, 마와 제2호 삭제

나. 제3조 제2항의 제복 만드는 방법(별표1)과 제6조 지급기준(별표 2)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1.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 등"이라 한다), 방한복
2. 모 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u>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p> <p>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동복”이라 한다), 방한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신발(부츠 포함)</p> <p style="padding-left: 20px;">라. 부속물 : 넥타이·타이핀 및 허리띠</p> <p>2. 제1호에서 규정된 단속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흉장(개정 2005.09.30)</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신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p>	<p>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u>다음과 같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1.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동복”이라 한다), 방한복</p> <p>2.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2. <삭 제></p>

② 제1항의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시
장 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
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은 서울특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